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76,180	482,879	△ 6,699	△ 1.4	
일	반 회 계	87,067	93,766	△ 6,699	△ 7.1	
특 별 회 계	소	계	389,113	389,113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13	5,113	-	-	
	도시개발특별회계	384,000	384,000	-	-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26,073	1,224,667	101,406	8.3
일 반 회 계		438,550	327,794	110,756	33.8
특별회계	소 계	887,523	896,873	△9,350	△1.0
	교통사업특별회계	1,050	13,050	△12,000	△9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8,740	98,740	-	-
	도시개발특별회계	787,733	785,083	2,650	0.3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9,646	46,345	△6,69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9,646	46,345	△6,699	○ 향후 납부할 지하도상가 임대료 상계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 감	사유	사업별설명서
총 계		293,464	182,708	110,756		
계속사업	재난관리기금 적립	244,220	135,920	108,300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 비용을 위한 적립금 확보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244	45,819	3,425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대부분 감면을 통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대금e바로 재구축	-	969	△969	○ 서울시 대금e바로와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통합 사용으로 재구축 예산 절감	

2)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	12,000	△12,000		
계속사업	제2자유로 증점부(난지도길) 입체화	-	12,000	△12,000	○ '20년 3월 지정된 고양행릉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룡사거리 지하화가 포함됨에 따라 구룡교 확장공사 추진 여부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공사 발주를 위해 편성한 예산 감추경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00	350	2,650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3,000	-	3,000	○ 민자타설과 연계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30억원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 촉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	200	△200	○ 국립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른 예산 감추경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로확장	-	150	△150	○ 용산공원 북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본 용역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타당성조사 불필요 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감추경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7.1% 감소한 871억원임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33.8% 증가한 4,385억 50백만원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92.0% 감소한 10억 50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51억 13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987억 40백만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3,840억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7,850억 83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44조 7,067억 93백만원(총계규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 추정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원)’이며,

-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3,060억원), 그린뉴딜 활성화(750억원), 스마트시티 실현(550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3,453억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635억원), 로컬 자생력 강화(265억원)에 집중 투자 예정이며,
- 이밖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한 2,959억원을 편성했는데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66억 99백만원) 감소한 4,761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1조 3,260억 73백만원임.

2.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66억 99백만원) 감소한 4,761억 8천만원이며,
-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기정예산 463억 45백만원 대비 66억 99백만원이 감소한 396억 46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인데,
- 코로나-19 대응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대부료 감면을 신청한 2,580개 점포¹⁾(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상계처리 예정인 1,437개소(순수상계 1,154개소, 환급·상계 복합 283개소)에 대한 대부요율 한시적 감면(6개월, 50%)을 적용한 결과임.

$$\begin{aligned} \text{연간 대부료} &= \text{재산평정가격} \times \text{대부요율} \\ \text{감면 대부료} &= \text{재산평정가격} \times \text{대부요율} \times 50\% \times (6\text{개월}/12\text{개월}) \end{aligned}$$

- 한편, 이미 1년 치 대부료를 납부한 점포 중 해당 감면금액만큼의 환급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에서 34억 25만원 증액 편성함.
- 참고로,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1) 전체 지하도상가 점포 2,788개 중 85개는 미신청(연락 불가능 등)과 123개는 비대상(공실, 상인회 이용 등)임.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 이에 3월 31일 중앙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²⁾을 단행함에 따라 감경근거가 마련되어 대부료의 감면조치가 실현되었는 바,
- 서울시로서는 대부료 수입 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음.

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대금e바로 재구축(기정예산 9억 69백만원)’사업의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NO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집행액(집행률)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추경 사유
총 계			182,708	163,559	110,756	293,464	
1	안전총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적립	135,920	135,920 (100.0%)	108,300	244,220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수해) 응급복구 등 재난 대비 기금 적립금 확보
2	건설혁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5,819	27,639 (60.3%)	3,425	49,244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부료 6개월 감면분 환급
3	건설혁신	대금e바로 재구축	969	- (0%)	△969	-	○ 서울시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 중지 및 조달청 하도급자감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편의 증진 및 예산 절감

- 먼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적립’은 기정예산 1,359억 2천만원 대비 1,083억원(79.7%)이 증가한 2,44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1,359억 2천만원)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수해 등의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됨.

-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6월 초 기준 14차례에 걸쳐 총 9,063억 9천간백만원을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지출하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15억 21백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470억 66백만원으로,

[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2020년 6월초 기준)

구분	금액(백만원)	주요 내용
계	812,712	코로나19 대응
	93,682	'20년 재난예방 사업
1차('20.1.28.)	16,817	대중교통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 홍보활동 지원
2차('20.2.04.)	2,882	방역물품 구입, 감염병 진단장비 및 시약,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등
3차('20.2.17.)	2,975	대중교통시설 방역비 지원, 구급대원 방역장비 구매 지원 등
4차('20.3.03.)	35,948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응압병상 확보
5차('20.3.12.)	10,084	(코로나 긴급대응) 천 마스크 제작,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92,049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6차('20.3.18.)	33,589	해외마스크 구매, 방역물품 구매 비원, 잠시멈춤 캠페인 지원 등
7차('20.4.09.)	826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8차('20.4.23.)	16,618	온라인 등교 개학 지원,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대책 지원 등
9차('20.4.24.)	3,977	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10차('20.5.08.)	250,000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11차('20.5.12.)	108,30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2차('20.5.19.)	325,886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13차('20.6.02.)	3,025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물품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1,633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및 체설자재 구매
14차('20.6.08.)	1,785	청사 및 소극장 방역,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75조제2항³⁾에 따른 법정 의무예치금 2,602억 48백만원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이처럼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의무예치금까지 대폭적으로 사용한 원인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 4월 2일 신설된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⁴⁾ 적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이 허용됨에 따른 것임.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회 증액 편성된 1,083억원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총 잔액이 1,553억 66백만원(47,066백만원 + 108,300백만원)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예치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다만,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의무예

3)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치금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사용 후 언제까지 의무예치금의 법정 수준을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 의무예치금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차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의무예치금 회복을 우선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가올 풍수해 대비 재원과 코로나-19 대응의 부족 및 추가 재원 확보차원에서 금번 제295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임.
- 다음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은 기정예산 458억 19백만원 대비 34억 25백만원(7.5%)이 증가한 492억 44백만원을 편성했는데,
- 이는 앞서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조치 중 이미 1년치 대부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한 감면분 환급을 위한 것임.
- 실제로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별 특정 상가(소공, 강남역)의 유동인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공지하도상가의 경우 66~69% 감소, 강남역지하도상가의 경우 36~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차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표] 코로나-19 상황별 유동인구 분석(소공·강남지하도상가) (단위: 명)

구 분	소공지하도상가		강남역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증 감	유동인구	증 감
국내 1번째 코로나확진자 발생(1.20)	21,341	-	134,702	-
코로나 심각단계 상향(2.23~5.5)	6,601	△14,740(69%↓)	80,421	△54,281(40%↓)
사회적거리두기(3.22~5.5)	6,510	△14,831(69%↓)	80,986	△53,716(40%↓)
생활방역 전환(5.6~5.27)	6,961	△14,380(67%↓)	85,705	△48,997(36%↓)
국가재난지원금 지원(5.11~5.27)	7,243	△14,098(66%↓)	86,241	△48,461(36%↓)

* 기간별 평균 / 국내 1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1.20) 대비 증감

- 다음으로, ‘대금e바로 재구축’사업은 ‘11년 최초 구축된 대금e바로 시스템의 복잡·노후화 및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구축하려던 ‘20년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69백만원 전액을 감추정하려는 것임.
- 이는 2021년부터 현행 서울시의 ‘대금e바로’를 점차 폐지하는 대신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통합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인데,

[표] 대금e바로와 하도급지킴이 비교

구분	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조달청
사용기관	서울특별시 (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정부기관, 광역단체, 기초단체, 공공기관 등
사용대상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건설공사 및 SW용역계약 등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구축시기	2011년	2013년
연계 금융기관	10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16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장점	- 서울시 업무흐름, 기능개선 등 신속반영	- 원·하도 전자계약 체결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행정시스템(e-호조, 행정포털 등) 연 계로 자동로그인 기능제공 - 서울시(자치구 포함) 통계 직접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사 실적증명서(원도급사 폐업 등) 요청 시 전자화 발급 가능 -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전용계좌, 사용방법 습득 용이 - 사용기관별 예산투자 없이 활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관리 불편 - 노후화로 사용불편 및 보안취약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계약정보 수기입력, 별도 로그인 - 서울시 요구사항 신속한 반영 어려움 - 기관별(시·구) 통계기능 별도 제공

- 당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① 서울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불가, ②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포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괄 통계 기능 출력화면 구현 불가, ③ 서울시 행정포털 자동로그인 연계 불가 등의 한계로 ‘대금e바로’를 대신한 통합사용이 불가했으나,
- 금년 1월 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립 사업” 입찰공고 후 4월 서울시가 상기의 한계사항에 대해 조달청에 해소 반영 가능여부를 문의(건설혁신과-5988, ‘20.4.23.)한 결과
- 조달청으로부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립 사업”(‘20.9월말 사업종료)을 통해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한 후 차년도에는 “2021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전자조달관리과-3463, ‘20.4.28.)을 받아 이에 근거한 것임.
- 따라서 이번 감추경 자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고 그 당위성은 인정된다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보다 조

기에 이 같은 협의가 이뤄졌다면 연평균 3억 13백만원 가량 지출되었던 대금e바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표] 최근 5년간 대금e바로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유지관리비	218	295	300	347	405	313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 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사업 1건에 기정예산 120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NO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집행액(집행률)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추경 사유
총 계			12,000	470	△12,000	-	
1	도로계획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12,000	470 (1.4%)	△12,000	-	○ '20년 3월 지정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룡사거리 지하화가 포함됨에 따라, 구룡교 확장공사 추진 여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공사 발주를 위해 편성한 120억원 전액 감추경

- 동 사업은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구룡교 확장공사 발주를 위해 120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3월 지정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룡사거리 지하화 개선안이 포함됨
에 따라



[위치도]

- 구룡사거리 구간에 대한 파주운정3지구와 고양창릉지구 간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는 고양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구룡사거리 구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당 구룡교 확장공사의 금년 내 발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것임.
- 서울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 및 조정으로 동 사업의 추진에 더 이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본 사업과 같이 교통 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1건에 30억원 증추경과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과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로확장’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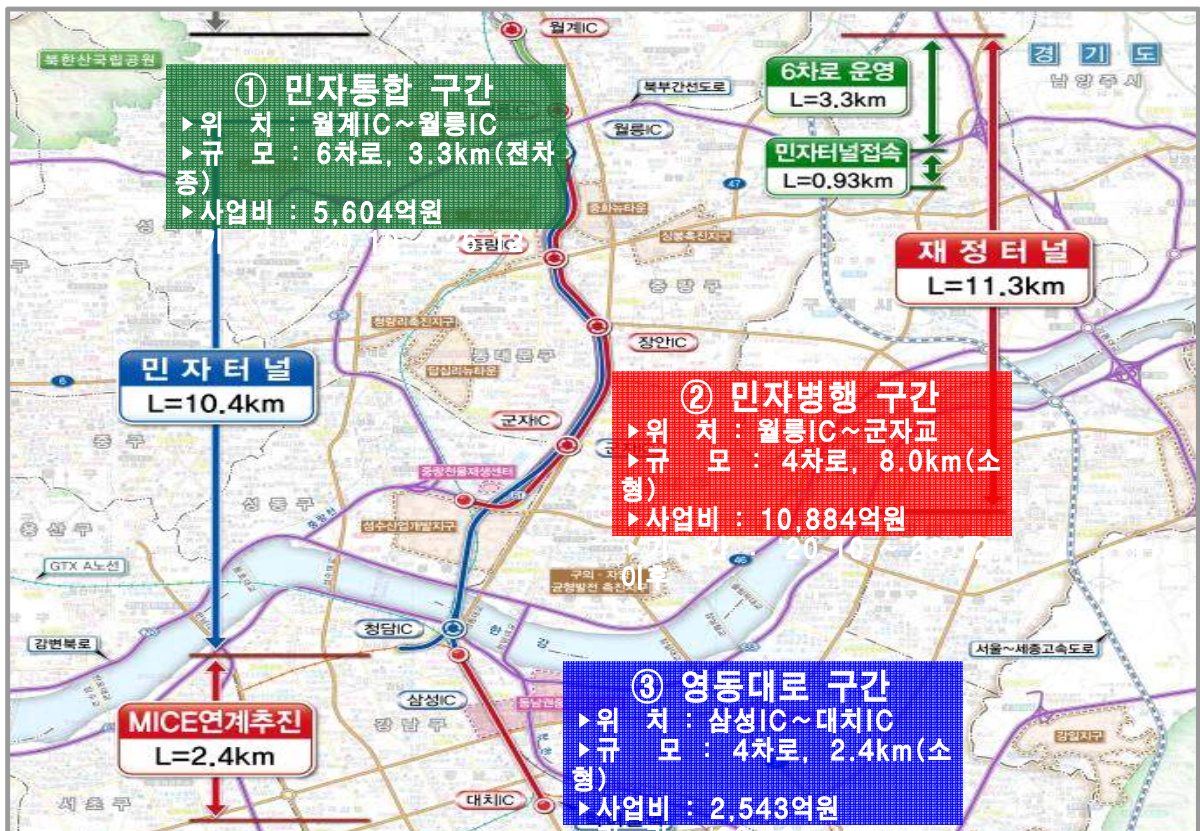
NO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집행액(집행률)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추경 사유
총 계			350	-	3,000	2,650	
1	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	-	3,000	3,000	○ 민자터널과 연계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30억원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 촉진으로 잠재된 지역 경제에 활력 부여
2	도로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200	- (0%)	△200	-	○ 국립의료원 산후이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당해연도 예산 감추경
3	도로계획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로확장	150	- (0%)	△150	-	○ 용산공원 북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차로수, 주변영향, 도로선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타당성조사 불필요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감추경

-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는 현재 추진 중인 민자터널(10.4km, 월릉IC~삼성IC)과 별개로 동부간선도로 군자교부터 월계1교까지(동부간선도로 구간, 11.3km) 그리고 영동대로 학여울역부터 경기고앞까지(영동대로 구간, 2.4km) 연장 13.7km에 폭 4~6차로의 지하터널을 건설하려

는 사업(2018.1.~2028.12.)으로 총 사업비 1조 9,839억원(전액 시비) 중 금회 신규로 30억원을 편성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이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난 제290회 정례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제3차제안 공고 및 제안서 검토·평가를 거쳐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본 재정사업의 경우 ‘22년 착공 예정인 민자터널의 건설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21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기본설계비용 211억원 중 금회 소요비용 3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구간별 추진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 이후
재정터널	민자통합 (3.3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민자병행 (8.0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영동대로 (2.4k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			
민자터널	우협	협상	실시	공사시행					

[단계별 추진일정]

- 민자터널과 재정터널의 접속부 공사, 공사 중 교통분산, 개통시기 등을 감안하면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다음 [표] 즉, LIMAC(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시행한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동부간선도로가 현재 법적으로 불법도로임을 감안 기존 4차로 상부도로를 배제하고 검토한 시나리오 3(B/C=1.97)이 LIMAC이 설정한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현실에 부합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판단 하에

[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사업,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구분	관련 근거	수행기관	시나리오 개요	사회적할인율	B/C
재정터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시나리오1: 총10차로(상부6+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0.35
			시나리오2: 총8차로(상부4+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0.01
			시나리오3: 총4차로(상부0+민자4)⇒총8차로(재정4+민자4)	4.5%	1.97
민자터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총 6차로(상부6) ⇒ 총8차로(상부4+민자4)	4.5%	1.01

- '20.5.8일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5708)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어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임.

[표] 투자심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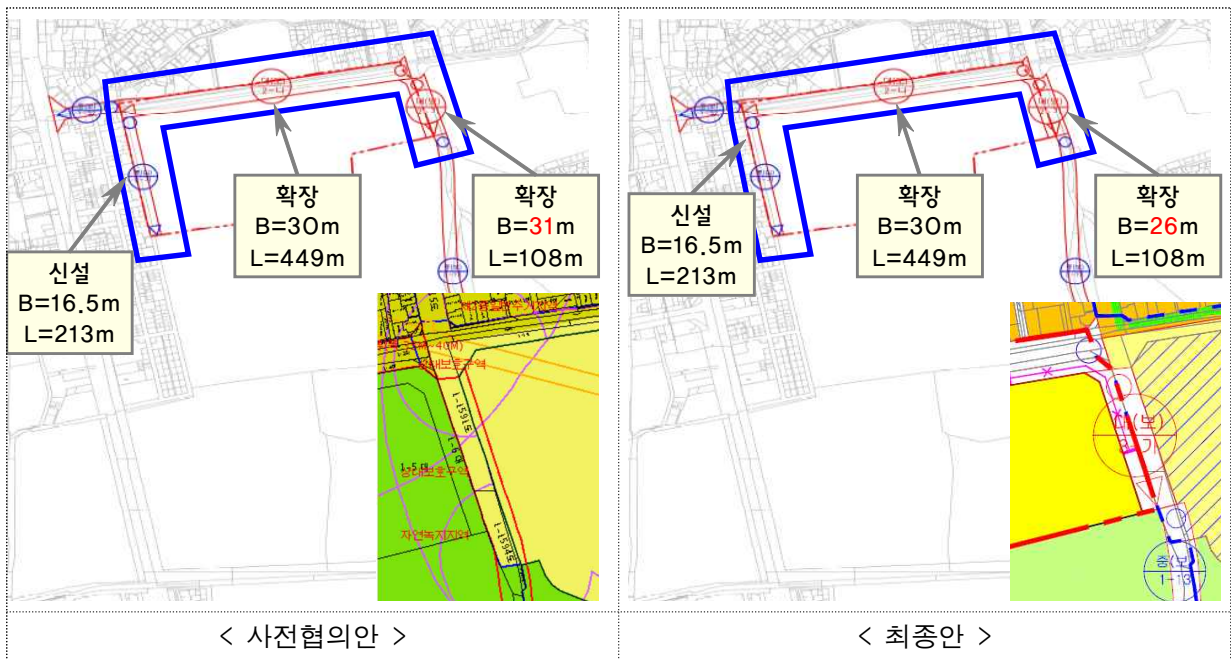
사 업 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부 서 명	도로계획과
심사결과 및 내 용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우회도로 대안마련
사 업 비	1,983,960백만원 (시비 1,983,960백만원)

-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홍수 위보다 낮아 안전 및 기능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음.
- 다만, LIMAC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추진한 이후 기존의 동부간선도로 상부 6차로 구간을 폐쇄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 시나리오 3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상차로 폐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교통 여건 개선과 의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려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편성했던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함.

- 이는 국립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른 것으로 '19.9.8일 국립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이전 추진 중단을 공표했으나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전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도로계획과에서는 금년 2월 7일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과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도로계획과-1915, '20.2.7.)한 결과,
- 별다른 진척이 없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보건의료정책과-8270, '30.3.6.)을 접수한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측 중단발표('19.9.8.)가 의회 예산안 제출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욕만 앞세운 다소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북측 주변 도로확장'사업은 주한 미국대사관(이하 '미대사관') 이전 예정 부지인 용산공원 북측 주변의 도로확장(2개소) 및 신설(1개소)을 위한 사업으로 '20회계연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했던 예산 1억 5천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임.

- 이는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87억원(용지보상비 포함)으로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시 투자심사대상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려 한 것이나,
- 미대사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한 미국대사관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20.7월 고시예정)’에 대한 시 도시관리과의 입안 추진 과정에서 금년 1월 본 사업의 도로확장구간의 도로폭을 조정(31m→26m)하여 보상구간을 제척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총 사업비가 당초 87억원에서 보상비 50억원(추계액)을 제외하고 협의안에 따른 공사비 재산출 후 20억원 이내로 축소되어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 더욱이 미대사관측에서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교통영향 평가 용역에 차로수, 주변 영향, 도로 선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임.

본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0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사전협의(도시관리과-도로계획과)
- '20.01. : 미대사관측 교통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협의
 - 보상구간 제척한 도로폭으로 사업 추진
- '20.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도시관리과→교통정책과)
- '21.01.~'23.12. : 미대사관측과 도로사업 협의 후 설계 및 공사 시행